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14
----------	-----

제출년월일 : 1994.11.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 제안사유

-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소홀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실추가 예상되어
-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설치관리자의 책무(청결유지 및 편의용품 비치) 규정 (안 제3조)
-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사항 규정 (제 13,14조)
- 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명시 (안 제18조)

□ 첨부

- 시장조정위원회 회의결과 1부
- 안건설명 결과보고서 1부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8. 기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 2 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6조(기타시설)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 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의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

의 정비·유지·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및 비용보조)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임을 알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 장 시설개선명령

제13조(시설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②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 6 장 과태료 부과징수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 ④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별 표 】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제 5 조			
가. 제5조 제1,2,3,4호 위반		20	40	60
나. 제5조 제5,6,7호 위반		10	20	30
2.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히 한 때	제 8 조	10	20	30
3.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 9 조	10	20	30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제 10조	20	30	50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 17조 (제2호내지 제4호)	20	30	50

【 별첨 제1호 서식 뒷면 】

이 호																		
		사 리 3×4																
성·회·주 직·수 (본·노 수·거)	년월일	내	역	수	기	량	년월일	내	역	수	기	량	년월일	내	역	수	기	량
비 고		○ 권리번호 : 동별 일련번호 ○ 지역구분 : ①터미널 ②시정 ③여 ④공원 ⑤유원지 ⑥문화제 ⑦도로변유계수 ⑧시가지 ⑨주유소 ⑩형·포구 ⑪신축점 ⑫운동점 ⑬기타 ○ 권리주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원, ○○면협회, 개인 등)																

공 공 회 장 실 개 선 명 령 이 행 서

제 1 기
5 회

개 출 기	(1) 청 구 (명 칭)	(3) 주 민 동 의 비 호 (전화번호)
	(2) 설 명 (대 표 자) (4) 주 수	
(5) 개 선 명 령 시 행		
(6) 개 선 이 행 시 행		
(7) 개 선 이 행 기 간		

숙 주 시 공 공 회 장 실 설 기 및 권 리 주 례 제 15 조 제 3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개 선 명 령 을 이 행 하 였 기 에
이 행 시 행 을 제 출 하 나 니 다.

년 월 일

제 출 자 (시·법·구·읍)

숙 주 시 공 공 회 장 실 권 리

구 비 서 류 : 없 음

수 수 된 없 음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숙 초 시 장

인

【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속주시공중회정식 심치및관리주례 제 주
제 항	
납 부	성명:
이무지	주소:
과태료금액	

위이 과태료는 법 제 조
이 규정예 의하여 부과되었
오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부인	속 주 시 정
-------	---------

(수납은행보편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속주시공중회정식 심치및관리주례 제 주
제 항	
납 부	성명:
이무지	주소:
과태료금액	

위이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부인	속 주 시 정
-------	---------

(시정보통)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속주시공중회정식 심치및관리주례 제 주
제 항	
납 부	성명:
이무지	주소:
과태료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인부인	속 주 시 정
-------	---------

(개인보편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속주시공중회정식 심치및관리주례 제 주
제 항	
납 부	성명:
이무지	주소:
과태료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인부인	취급자인
-------	------

유료화장실 승인신청서										처리기한 5 일
신청인	① 상 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시설 현황	⑤ 소 재 지					⑥ 관 리 주 체				
	⑦ 전담 관리인 (전화번호:)					⑧ 설 치 년 도				
	⑨ 다른 법령에 의한 화장실 설치의무 ☐ 유 ☐ 무									
시 설 내 역	⑩ 면적 규모					⑪ 이용인원 (일평균)				
	⑫대변기		남 개	여 개	⑬ 소변기 개					
	⑭편의시설 ·용품	세 면 기	에어타월기		환 풍 기		화장지	비 누	약 품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대	대		대					
숙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날인 또는 서명) 숙 초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유료화장실 운영계획서 (운영시간 · 사용요금등 명시) 1부 2. 변소의 설치장소 및 내부구조도 1부										수수료없음

승인 제 호

유료화장실 승인서

대 ① 상호(명칭)

표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자 ④ 주 소

⑤ 전 담 관 리 인

(전화번호 :)

⑥ 설 치 장 소

⑦ 시 설 내 역

대 변 기

소 변 기

남

여

개

개

개

세 면 기

에 어 타 월 기

환 풍 기

대

대

대

⑧ 1 회 사 용 료

원

숙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숙 초 시 장

인

【 별지 제6호 서식 뒤면 】

(변경사항)

[illegible]